

국가데이터처 스마트조사센터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국가데이터처 스마트조사센터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. 11. 27.

국 가 데이터 처 장

1. 채용인원

지역	채용구분	채용인원	계약방법	채용기간	수당	근무장소	비고
대전	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)	1명	근로계약	2026. 1. 2.~ 2027. 6. 30.	73,170원 (1일 기준)	본청 (대전)	표본관리비 및 급식비 별도지급

※ 수당은 '26년 예산안 확정시 변경 예정이고, 향후 상황에 따라 계약 연장될 수 있음

2. 담당업무

담당업무	세부내용
스마트조사센터 소관 통계조사 및 기타 관련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조사센터 소관 통계조사 자료수집 -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.기계수주동향조사 - 서비스업동향조사 및 온라인쇼핑동향조사 ○ 비협조 대상처 응답 설득 ○ 조사표 작성, 입력, 내용검토 및 보완 ○ 기타 스마트조사센터 관련 업무 지원 등

3. 채용 방법

1차 서류전형 (총계 100점)			2차 면접전형 (총계 100점)
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	자격증	기타점수(장애인 등)	면접
90	5	5	100

※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은 1차 서류, 2차 면접전형에 각각 적용

1. 1차 서류전형

- 선발인원: 1명
- 평가방법: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(90) + 자격증(5) + 기타점수(5) + 가점(국가유공자 등)
 - 「자격증」 가점 부여 기준(최대 5점)

자격증	점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회조사분석사 1급, 빅데이터분석기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 ▶ CS Leaders(관리사),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, 텔레마케팅관리사 	5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 ▶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	3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(구 1급) 	1

※ 종류 구분없이 2개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

-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
- 「기타점수」 가점 부여 기준(최대 5점)

항목	내용	점수
저소득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초생활수급자 ▶ 차상위계층 ▶ 한부모가족 세대주 * 관련 증빙서류 제출	2
다자녀 양육자	▶ 만 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자 * 주민등록등본 제출	2
북한이탈주민	▶ 북한이탈주민 *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2
장애인	▶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* 장애인증명서 제출	3

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 가능

※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

-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(최대 10점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

5점	10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	-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 혁명부상자, 4.19 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 민주화운동 희생자
	-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
	-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

5점	10점
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	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
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
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	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
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	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※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

- 동점자 처리
 -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
 -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
 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점수 > 기타점수 > 자격증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인원을 선발
 - 위의 기준으로 순위 구분이 안 될 경우 선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합격처리

2. 면접전형 평가

- 평가방법: 면접(100) + 가점(국가유공자 등)
 - 육성발음, 상황 대응력, 통계조사의 이해, 자세와 태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
- 최종 합격자 선정
 -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
 - 면접전형 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 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- 예비(추가) 합격자 선정
 -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(추가)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4. 응시 자격요건

1. 필수요건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
(단,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되는 자는 제외)
-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국가데이터처 ‘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’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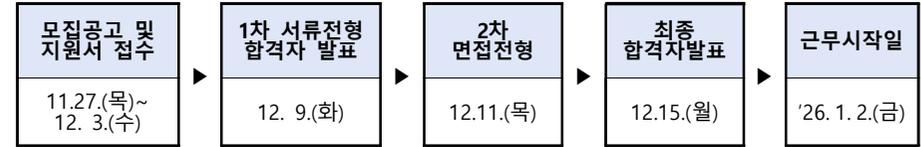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불합격 처리 대상

- 채용서류 미비자, 거짓 작성자(2년간 불합격 처리)
-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정당한 사유* 없이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(소속기관 포함)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
 - *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(질병, 가족간호, 타지역 이사,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)
 - ** 합격자 발표 후 채용(교육포함)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5. 채용 일정



- 채용공고: 2025.11.27.(목) ~ 2025.12. 3.(수)
- 응시원서 접수: 이메일(e-mail)
 - 접수마감: 접수마감일 18시 수신에 한하여 접수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5.12. 9.(화)
 -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SMS 발송
- 면접일시: 2025.12.11.(목) 세부시간 및 장소는 추후 결정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12.15.(월)
- 근무시작일: 2026. 1. 2.(금)

6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11.27.(목) ~ 2025.12. 3.(수)
- 접수방법 및 접수처: 이메일(e-mail)

기관명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국가데이터처 스마트조사센터	정연희	042-481-1264	smart5100@korea.kr

- 이메일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수신에 한하며, 제출 서류는 반드시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
- * 이메일 제목 : 스마트조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지원서(성명)

7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(붙임1) ▶ 응시원서(붙임2) ▶ 자기소개서(붙임3) ▶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붙임4)
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5) ▶ 자격증명서(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) ▶ 저소득층 및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▶ 일반경력증명서(콜센터, 지자체 통계조사 등)*

* 응시원서에 기재하는 경우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,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

** 국가데이터처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

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